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9. 14.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8년 8월 27일
- 다. 상정일자 :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2018. 9. 14.)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감사팀장 김기영

### 가. 제안이유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등 (안 제1조 ~ 안 제3조 )
-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및 공익신고의 방법 등 (안 제4조 ~ 안 제10조)
-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등 (안 제11조 ~ 안 제16조)
-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등 (안 제17조 ~ 안 제18조)
- 민간협력 및 표창의 수여 등 (안 제19조 ~ 안 제22조)

### 3. 검토보고 (전문위원 유준상)

-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지난 4월 17일 일부개정 되어 금년 10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미비했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등을 규정함.
  - 안 제4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및 공익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11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17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19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민간협력 및 표창의 수여 등에 대하여 규정함.
- 검토의견으로는 공익제보는 최근 복잡·다양한 행정현실 속에서 공직사회 부패 및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 침해행위를 적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따라 문제를 고발하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를 권장하고 보호 해줌으로서 궁극적으로 사회 정의실현과 건강한 시민사회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임.  
특히, 제6조 비실명 대리신고 방법 신설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게 명시내용은 용기 있는 구성원이 공익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국가기관, 기업, 단체 등 투명한 사회로 발전 될 것으로 사료됨.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등에 따른 공익신고제도의 운영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깨끗한 지역사회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 지급소요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예산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